##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988 발의연월일: 2025. 2. 7.

발 의 자:김태호·이인선·엄태영

박충권 · 강명구 · 서천호

조승환 • 한기호 • 김성원

김종양 · 진종오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출생 직후의 심리적 불안 상황에서 아동의 입양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의 출생일부터 최소한 7일이 지난 후에 친생부모가 아동의 입양에 관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.

그런데 출생 후 7일이라는 숙려기간은 입양에 관하여 논의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므로, 아동의 출생 후 친생부모가 아동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기회를 가진 후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숙려기간을 7일에서 15일로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중 "7일"을 "15일"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제2 호에 따른 입양의 승낙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를 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 전부	법률 제19555호 입양특례법 전부		
개정법률	개정법률		
제17조(입양 승낙 및 동의의 요	제17조(입양 승낙 및 동의의 요		
건 등) ① 제15조제1항제2호에	건 등) ①		
따른 입양의 승낙, 제16조제1항			
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			
출생일부터 <u>7일</u> 이 지난 후에	<u>15일</u>		
이루어져야 한다.		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	